

UR 대비 수산정책의 과제와 방향*

최 정 윤**
(부산수산대학교)

I. 머리말

1993년말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가는 이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서 1994년 2월 1일자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 이하 농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UR 이후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업 및 농어촌 부문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대통령령(14151호, 1994, 1, 28)에 의하여 발족된 이 위원회는 1994년 2월 1일부터 동년 7월 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었으나, UR이후 WTO 출범과 21세기의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을 대비한 대통령의 「농어촌정책결정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는 30명의 위원 전원이 11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분과회의 등 무려 20여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각 도별로 농어촌 현장 답사와 농어민의 여론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의 농어촌 시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물론, 수산청, 산림청, 농업진흥청 및 수산진흥원을 비롯, 내무부, 건설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청, 환경청, 경제기획원 등의 농어촌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정책 내용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금년 3월 4일 「농어촌특별세법」을 국회에 상정, 이를 3월 24일에 법률 제4743호로 공포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의해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 14313호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또한 농발위원회는 5월 19일과 6월 14일 2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그간의 정책개발 결과를 직접 보고·건의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제 11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농어촌과 농수산업에 관한 장기 발전 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7월 31일 최종보고서로 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하의 수산정책 과제는 94.7.31 대통령에게 마지막 보고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총 1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가운데서 필자가 관여한 어촌 및 수산부문에 관한 내용 전반을 재정리하여 이를 「UR 대비 수산정책의 과제와 방향」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한국수산학회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1994년도 추계 학술 발표회에 각각 보고하는 것은 첫째, 이 보고서의 내용이 비록 서술적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수산정책의 방향과 현안 과제를

* 이 글은 1994. 2. 1.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수산업 및 어촌 부문의 UR 이후의 장기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이다.

** 부산수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94. 2. 1~7. 31까지 농어촌 발전 위원으로 활동했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산업 및 어촌에 관한 시책 수립에 있어서는 물론, 수산분야 사회과학을 포함한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있어서 방향 설정과 과제 선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둘째는 앞으로도 혹시 대학이 수산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본 논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나 요망 사항 또는 보완 사항 등을 기초로 보다 충실하고, 미래 지향적 수산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어촌 및 수산 문제의 현상과 진단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국민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중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 어업자원의 남획과 연안어장 오염의 심화로 어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시장개방과 수입 자유화 조치로 수입 수산물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전체 어민들은 생산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양어업 역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상의 조업 규제 강화로 지속적인 조업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UR 협상 타결에 의한 수입 자유화로 우리 나라는 앞으로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관세양허협상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연근해 영세 어업은 그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연근해 어업의 생산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않고는 수산물 공급의 높은 대외 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바다, 어항, 어촌은 수산업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자원의 유효 이용, 영토의 확장, 휴양, 관광 공간의 제공 등의 기능과 아울러 비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크게 발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산정책은 어로 수단의 확대 발전과 연안 지역에 있어서의 어항 개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추어졌 왔을 뿐, 어민의 생활과 여기에 관련된 어촌 개발에 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어촌 인구의 질적, 양적 감퇴와 더불어 현재의 낮은 소득 수준 및 열악한 생활 여건이 더이상 지속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수산업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인 해양의 이용, 관리, 보존의 역할마저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1. 수산자원 조성, 어업 구조 조정, 어항 정비 확충, 어장환경 보전을 통한 튼튼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2. 국제어업 협력 강화 및 해외 어업자원 개발 지원을 통한 원양어업의 활성화 3.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체제 혁신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4. 수산업 기술개발 방식 및 체제 개편과 전문 어업 경영 인력 육성 5.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 종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어업 경영의 안전과 어민의 정주 여건 개선 6. 수입 수산물의 효과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산 동식물 검사 기능 강화에 각각 두어져야 할 것이다.

Ⅲ.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수산자원의 조성확대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 종묘 방류사업, 인공 어초 투하 사업 등 적극적 자원 조성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980년대부터 국립종묘배양장의 설치와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종묘 양산 체제는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인공종묘 생산량은 증가하는 종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묘용 치어 총 생산 규모는 1992년 인공 종묘 방류 및 분양량 실적으로 미루어 일본의 순수 방류량의 13%에 불과하며, 어류의 경우는 일본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용 종묘로 공급된 치어 생산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한 인위적인 자원 조성이 시급하므로 인공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양식 품목에 대하여는 고품종 인공 생산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자연생태 및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업 경영의 기업화와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인공 종묘 생산품목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정부 산하의 수산종묘배양장과 민간 배양장의 2원적 종묘 생산 공급체제를 국립종묘배양장과 도립종묘배양장, 민간종묘배양장(수협 포함)의 3원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립종묘배양장은 해역별 연구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조정하고, 생산 기술이 미확립된 신규 품종의 시험 연구와 중간 육성 등 개발 기술의 생태 적응 시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회유성 어종의 인공 종묘에 대해서도 대량 생산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도립종묘배양장은 생산 기술이 확립된 소하·회유성 및 정착성 종묘의 대량 생산과 종묘의 중간 육성을 담당하도록 특성화하며, 수익성이 확립된 양식용 종묘의 생산은 민간 부문이 담당하도록 장려한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종묘 방류 및 자원육성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공 어초 시설은 종래의 산발적, 지역 배분적 투하 방식을 지양하고, 해저 지형의 특성과 자원분포 상태 및 수심에 따른 다양한 어초의 개발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공 어초 시설이 단순한 자원조성적 측면만이 아닌 연안 어가의 소득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 어초 시설과 그 조성 사업이 인공 어초군, 인공 어초대 및 인공 어초 어장과 같은 단계적 구조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하며, 집중적으로 조성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 어초 어장에서의 능률적인 어업 실현을 위한 어구 어법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수산자원 보전 구역의 확보

국토 자원의 종합적 이용·관리라는 측면에서 어획 노력의 과잉 투입으로 인해 감소된 자원량을 회복

시키고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황폐화된 어장과 해양 생태 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해야 한다.

바다의 자정 능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인 간척, 매립은 수산 동식물의 산란 및 치어의 생육장으로서의 최적 조건을 지닌 어장을 소멸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어업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방조제 외연의 광활한 범위까지도 어장 생산성 및 생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절약형 농업 기술의 발달과 쌀 소비의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할 때 농지 조성 및 확대를 위한 대규모 간척, 매립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임해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중소규모 간척, 매립 단지도 수산자원보전 지정해역(청정 해역, 수산자원 보전지역), 치어의 산란·서식해역 등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해역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해양오염으로부터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여야만 할 것이며, 이미 극심한 오염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굴, 패각 등 양식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 지원과 공동 처리장 조성이 용이하도록 해야하며, ② 환경 영향 평가의 간소화 및 국토 이용 관리법 등의 예외 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자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③ WTO 체제하에서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된 어장 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방법을 직접 보조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

(1) 어선 세력 조정

연근해 어업의 어획 대상 자원량은 지속적인 어획 강도 증가로 인해 크게 감소된 상태에 있으며, 최근의 어획 강도는 어업자원의 적정 이용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자원의 적정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과잉 투입되고 있는 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긴요한 정책 과제이다.

어선 세력 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안어업의 경우는 자원 상태를 고려하여 어업별 감축을 추진하며, 근해어업의 경우는 경영 상태가 불량하고 노후 어선 및 적정 어획 강도 비율이 높은 어업순으로 감축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인정 위에서 어선 감축을 유도하며, 연안어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폐업 보상 및 어선의 폐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근해어업의 경우는 국고보조와 자부담을 적절한 비율로 책정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현행 양식 면허제도는 품목별 면허이기 때문에 어민들 스스로 시장 변화에 따라 양식 품목을 자율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면허사항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면허 품목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민들이 기술 변화, 시장 변화, 어장 조건 등 생산 여건 변화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게 양식 품목 체계를 자주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면허제도 하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식 면허제도는 현행의 품목 지정제에서 복합 품목 또는 품목 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어장은 영세한 다수 지선 어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적 배려와 어촌 공동체인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동어장은 생산 및 어획 방법을 원시적 방법에 한정함으로써 공동어장 이용의 방법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어서 공동어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동어장의 이용 방법을 단순한 채포에서 벗어나 자원 증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 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어장 면적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어업자원 관리 방식의 전환

기존의 어업자원 관리는 어업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어획 수단 중심의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시 체제(**monitoring system**) 하에서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원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 보완을 위하여 총어획량 허용(**TAC :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에 의한 자원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단기적으로는 연안 정착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실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중국해에서의 한,일,중 공동 자원관리에 대해서 일정 원칙을 수립한 후에 총어획량 허용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다용도 생력형 어선 개발

어업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력과 기타 어업 경영 요소의 절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규모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용도, 생력형 어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후화된 어선은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비가 저렴한 합성수지선 또는 강선인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하며, 어선의 노후기관 및 저효율 기관을 연료 절약형 기관으로 대체하고, 어획물의 선도 유지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아울러 어업 장비 생산업체와 자재 구입 어민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어업 기계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5. 해외 어업 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

우리 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는 원양어업은 우리의 대중 소비 어종인 명태와 오징어를 80% 이상 공급하고 있고, 참치 등의 고가 어종은 거의 100%를 원양어업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과 200해리 경제수역 및 공해상 조업 규제 강화로 기존 어장은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새로운 어장 개척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소자본 업체가 8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어로 경비 상승 및 선원 확보난 등으로 경영 악화화 도산에 직면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원양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신어장 개발, 자원 보유국에 대한 어업 협력 증진, 해

외 어업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해 나갈 해외어업개발센터 등의 설립이 요청되며, 원양 출어 자금 공급 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원양업체에 대해서는 출어 자금 공급액을 확대해야 한다.

6. 수산물 유통 개선의 과제

「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하고 있는 어획물의 지정항 양륙제도와 수협 위판장의 지정 판매제를 자유 판매 제도로 전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를 통하여 생산 어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한 판매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유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양륙항에 있어서는 수산물 종합 처리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산지에서 1차로 경매된 수산물(선어)은 다시 상자만 바꾸어 소비지로 반출되는데, 이는 수산물 부가 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 도시의 공해 및 오염 부하량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므로 산지에서 비가식 부분을 제거하는 등 수산물의 상품화 개발과 규격, 포장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지 직판장 및 소매상과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 대신 소규모 양륙항에서는 활어 등 지역과 품목 특성에 적합한 산지 판매 시설을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어물, 가공 수산물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산물 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품질 향상 도모와 소비자 보호는 시장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수산물 유통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Ⅳ. 수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

1. 농수산 관련 기술의 현상과 과제

앞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의 이용이 필요해지고 농어가가 요구하는 기술이 다양해질 수록 공공연구 기관만으로는 이와 같은 농어촌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농림 수산업 기술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 보전형 내지는 친환경적 농림 수산업 기술 개발과 보급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 연구소와 민간 기업들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농림 수산업 관련 기술의 중요성과 새로운 환경 변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 개발과 보급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 위주의 농어업 기술 개발에서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며, 환경 보전형 농어업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고품질 생력화 기술을 신속히 개발 보급하는 등, 농림 수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술 개발 방식과 체제 개편

농림 수산업 기술 개발 정책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 수산부에 「농어업기술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농림 수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의 기본 방향과 기능 조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기관과 대학 및 민간과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초 연구는 대학이 담당하고, 민간 참여가 어려운 농어업 기술 개발은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수산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민간 기업과 대학간,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간의 연계를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핵심 기술은 특정 연구 사업으로 지정하여 대학, 농촌진흥청 및 수산진흥원 그리고, 민간 기업과 관련 연구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 base)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도 프로젝트 발주형식으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산분야 기술의 개발 과제

수산업 분야의 기술은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를 아울러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책 연구 기술 개발 정책이 현재의 국립 수산진흥원 중심의 연구 체제에서 벗어나, 해역별로 수산연구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예산, 인력, 조직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그 대신 국립 수산진흥원은 수산 정책과 연계된 수산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유전공학 연구 등 첨단 수산 기술과 고도의 과학적 어구 어법, 해 어황 정보 활용 기술의 개발 연구를 전담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역별 수산연구소는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실용화 연구와 해역의 환경 관리, 보전, 개발, 이용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수산연구소와 어촌 지도 기관이 연구 기술 개발 활동에서 상호 연계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연구 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고, 이를 생산 현장에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지도 보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급 사업의 계획, 실천, 평가에 농어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기술 보급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보급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업 관련 기술 개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는 노동 절약형 어법 및 기계화, 자동화 기술과 품종 개발이다. 이 분야는 현재의 어촌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계획적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산업의 직업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어촌 후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V. 수출입 검역 제도의 개선

1. 산업 피해 구제 제도의 활용

UR 무역 협상의 타결 결과를 이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수입 급증,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GATT에서 허용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Safeguard)를 적극적으로 원용함과 동시에 UR 협상에서 관세화 이행에 따른 급격한 피해 구제를 위해 규정된 특별 피해 구제제도(Special Safeguard)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무역위원회는 상공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상공 자원부의 공무원들은 수입에 의한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 대상국들로부터도 형평성이 결여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농림 수산물 산업 피해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국제간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공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무역위원회 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상임화시켜 신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 피해 조사 업무 실무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수산물의 경우는 부패성이 강하므로 산업 피해 구제 조사와 구제 조치의 신속성은 물론, 사전적 피해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 피해를 사후에 확인하기보다는 발동 요건으로서 「피해 우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요하고 민감한 수입 농수산물의 동향을 감시하며, 특히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내의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제도를 UR 협상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산업 피해 구제제도와 UR 협상에 따른 특별 긴급 구제 조치가 모두 농수산물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심각하여 수입물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 피해 구제제도를 원용하고, 반면 피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수입을 신속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수입 급증 현상에 신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 피해 구제 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수산청 및 관세청에 과거의 수입물에 대한 가격 동향, 수입물량의 추세 등에 관한 자료와 데이터 베이스(Data Base)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2.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시

전면적인 수입 개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도 함께 제고되어야 하므로 저급 수입 농림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경쟁력 제고와 유지에 따른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수입 농수산물(가공 식품의 원료 포함)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원만한 정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관련 제도와 법규의 미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인원의 부족과 단속 부실에도 있다. 따라서 단속의 강화와 함께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수입 농수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산물 검역 기능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동식물과 수산물 검역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미비, 제반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민 건강 및 국내 동식물과 수산물 보호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UR 동식물 검역 협상 결과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검역의 과학화 및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험 평가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 축적과 연구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수입량 급증과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립 동물검역소, 국립 식물검역소, 중앙 수산물검사소의 검역 인원 및 장비를 조속히 보강하되, 특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검사소는 수출 검사 위주의 조직에서 수입 및 내수 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국민 위생 검사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분석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수산 동식물 검역 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주요 무역국의 검역 법규, 제도,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국제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검역 정보를 입수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출 지원 제도 확충

수출 유망 농림 수산물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전문 생산 단지를 육성하되, 첨단 생산 기술 도입, 전문 인력 양성, 기계화, 자동화, 공동 선별 및 공동 포장 시설 확충 등에 힘을 기울여 수출 상품의 원가 인하는 물론, 외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농림 수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출업체간에 계약 생산을 권장하거나 국내 농림수산물 가격 변동과 수출상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수출 지원은 WTO 체제에서 허용하는 일반 서비스 및 우회 가능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방 정부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수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는 수출 품목의 선정, 연구 및 개발과 함께 농어민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포장, 수집, 가공 등 유통 관련 분야가 될 것이다.

아울러 농림 수산물의 해외 판매 전시장 확대하고 국제 농수산물 박람회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Ⅶ. 인력의 육성과 어촌 종합 개발

1. 어업 전문 인력의 육성

어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어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어업 전문 경영 인력의 육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어촌에서는 이와 같은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수산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실습 위주의 수산기술 및 경영 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수산업 경영기술 전문대학을 수산업 거점 지역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자는 어민 후계자로 선정,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수산대학의 연구 교육 기능 강화

수산업의 지역 경제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산대학을 육성하여 양식 기술 개발과 연구해 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높이도록 연구·교육을 강화한다.

3. 어촌 종합 개발

(1) 어촌 개발의 방향

어촌 개발은 해역이나 연안의 자연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어장·어항·어촌의 3자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연안어장은 기르는 어업을 중심으로 목장화되어야 하고, 어항은 다기능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어촌은 주택을 포함한 생활 정주여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어항과 어장이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정비 개발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어촌 주민 사이에 어촌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체제가 운영되어야 하고, 어촌 주민 위주의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하되, 어촌 개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의 수립과 함께 이것이 연차적,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어촌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집행

어촌이 보유한 어항, 어장, 수산 자원 및 관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어촌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중앙부처는 어촌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의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는 기본 정책에 어촌 종합 개발 지침을 반영하여 연안 지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실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군 단위의 지방 자치단체도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국의 어촌이 올바르게 진흥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촌 종합 개발 계획은 지역별 계획을 토대로 지방 자치단체가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투자를 집중시켜 나가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 진흥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프로그램(Policy Program)의 내용은 다양할 것이나 어촌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 어항과 주변 경관의 정비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 시설의 건설, 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의 건설, 해양 수족관의 조성 등 새로운 「마리너 빌리지」(Marinovillage)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촌의 진흥을 위해서는 어촌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어장의 환경 정화를 통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도서 지역의 유형별 개발 전략의 추진

도서 지역의 중심 산업은 수산업이며, 수산업의 활성 여부가 도서 지역 주민의 정주 동기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도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투자 효과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도서 지역 개발 전략은 연안 도서형, 군도 도서형, 고립 도서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개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서해안의 다도해 지역은 산업 및 해양 관광 발전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겨냥하여 남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와 관련 지방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다도해 종합 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재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지역에는 해양 박물관, 야영장, 민속관, 휴양 농원, 휴양 양어장, 토속산품, 지역 축제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한다.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본 등과 연결되는 국제적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 국제적인 교역 및 산업 기지를 입주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균형 개발, 주민 소득 증대, 지방의 국제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5. 거점 어항의 개발과 어항 기능의 현대화

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어항을 확충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여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어항의 개발은 어업 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과 해양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어항 중심의 광역적 어촌 지역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지역 개발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어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어항을 확충하고, 어항과 어항과의 거리 및 어장간의 거리를 단축해야 하며, 이러한 시책을 통해 어촌의 생활 만족과 생산 효율을 동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 어항은 현대화되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한 어촌 개발 종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6. 어촌 및 어업 환경 대책

수산업에 있어서 어장의 환경 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양식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가 하면 어선의 폐유, 폐어망, 어구 등을 해상에 마구 버림으로써 인근해 어장에서의 어로 활

동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굴 패각 등 양식 폐기물의 무단 방치와, 수중 투기 등으로 인한 연안어장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염 물질도 자원으로 재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패각 등 양식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산 관련 폐기물은 적시에 처리하고 어장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을 통해 퇴적물을 제거하고, 양식 종료 시설물을 완전 처리토록 지도·감독하는 일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하여는 성능이 우수한 어장 정화선을 건조하여 퇴적물을 채취·처리하고, 주요 연안 및 양식장의 수질 조사 등 환경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촌 지역에 따라서는 패각 처리장을 설치하여 섬유질 비료 생산을 촉진하는 등 오염원을 고부가 가치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어촌에서의 환경 보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민 단체의 환경 정화 사업과 환경 오염 감시 역할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민 단체와 정부는 협력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 사업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감시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양성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Ⅷ. 어업 경영 안정과 어민 복지의 증진

1. 농어민 복지의 향상

지금 우리 농어민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 환경 조건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의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어촌을 모두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농어민들의 사기와 의욕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농림 수산업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이 개발되고 농수산업의 구조 개선이 이룩되어 규모화, 기계화된 농림 수산업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농어촌의 생활 환경과 정주조건이 열악하다면 농어업 생산을 담당할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어촌에 남아있겠다는 정착 의욕은 감퇴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민에 대한 경영 이양 장려금 등의 농어민 복지 제도는 농어촌 구조 개선과 직결되며, 농어촌 교육의 개선은 농어민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 장래의 국가 인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말미암아 고향을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은 농어업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2. 어업 경영 안정 대책

(1) 어선 선원 공제제도 개선

수산업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다. 따라서 현재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에서 어선 공제와 선원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 노동부와 해운항만청 등에서도 관련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낮아(수협공제의 경우 5톤 이상 어선의 어선공제 가입률 69%, 선원공제 가입률 45%) 어업 재해 발생시 생산 기반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어민의 영세성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5인 이상 승선 어선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선주의 재해 보상책임 또는 보상제도에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업 경영 안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공제료의 국고 보조

선원 및 어선 공제료의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특히 영세 어선, 또는 동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보조 비율을 차등화(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어업 생산과 소득 보전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재보험제도를 도입, 초과 손해액이나 대형 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어선원에 대한 선주의 재해 보상 책임 및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3) 양식 공제제도 도입

최근 양식 기술의 발달로 양식 어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여 양식 어민은 경영 안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양식업에 대한 공제나 보험 등 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단지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한하여서만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64년 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한편, 양식 공제제도를 포함한 각종 어업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양식 공제제도를 도입, 양식 어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공제 대상 양식업으로는 공제 성립의 가능성 면에서 굴 및 김 양식업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서는 타 양식업과 어류 양식에 대해서도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식 공제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몇 년간 시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현행 제도와의 상충 요소를 조정하고 이 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사업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당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대어민 홍보 등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3. 농어업 재해 대책

(1) 「농어업 산재안전법」의 제정

농작물 또는 수산업 재해에 대해서는「농어업 재해대책법」상의 농림수산물 재해보상규정을 확대강화하여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보상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 대책으로서는 농수산물 공제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불량 농어업 기자재로 인한 피해는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어업 노동 사고를 줄이고 농어민의 안정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농약, 농기구 및 어업기계 등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어민에게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농어업 산재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농어업 재해보상제도의 확대

「농어업 재해 보상제도」는 농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재해를 비롯한 각종 우발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어업 재해보상 규정」이 있으나 재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현행의 재해 보상 규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3) 농어업 재해 공제제도의 도입

재해 보상제도는 재해 발생시 그 피해액을 일반 재정 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상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재해 예방이나 복구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고, 반대로 이 수준이 너무 낮으면 실효가 없으므로 현재의 「농어업 재해 보상제도」는 항상 최소한의 기초 보상 수준을 넘을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농 및 기업 어민, 혹은 전업 농어민들이 막대한 생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액을 보상받아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재생산이 가능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작물 재해보험이나 생산물 재해보험, 또는 이에 상응한 「농어업재해 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경영 이양 장려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와 동시에 농어업 경영 이양 장려금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55세 이상의 노령층 농어민에게도 60세 이후 일정 기간(5년 이내) 내에 농지나 어장을 이양하고 농어업에서 은퇴할 경우 경영 이양 장려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업 경영 이양 장려금제도」는 노령 농어민의 노후 보장과 동시에 농지, 농장 또는 어장을 젊은이들에게 넘겨 주도록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도 그의 유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도입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① 노령 농어민의 노후 보장제도이며, ② 농어업 경영 이양을 통한 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이다. 이 제도가 농어촌 지역에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계획과 때를 같이 하여 제기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연령 구성으로 보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너무 적은 대부분의 노령

농어민들로서 노후 대책이 없어 농지나 농장 및 어업을 계속 소유 경영하지 않고는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농어업 경영 이양 장려금」의 지급 방법으로는 60세 이후 65세 사이에 농지나 농장을 이양하거나 또는, 어업면허와 허가권을 반납, 이양하는 사람에게 기초 생활비 수준으로 경영 이양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 연금 실시 초기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령 농어민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점차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면 경영 이양 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어 국민 연금과 이중으로 지급되는 모순을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 연금 실시 초기에는 특례 노령 연금 수급권자(5년이상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가 발생하기 이전의 5년 동안은 농어업 경영 이양만 완료하면 정액 노령 연금액의 50% 수준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5년 이상 가입자로서 특례 노령 연금을 받게되는 자가 발생하는 해부터는 이를 1,2%씩 낮춰 지급함으로써 국민 연금과 경영 이양 장려금이 상호보완 되도록 국민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 경영 이양을 기피하는 경우는 60세 이후 지급되는 국민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 연금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농어업 경영 이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

VIII. 협동조합의 개편

1. 농·수·축협의 개혁 방향

1988년의 농·수·축협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정착되지 못하고, 운영면에서도 중앙회의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단위조합보다는 중앙회 위주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농어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 또는 중앙회 중심의 조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조합원의 주인 의식과 참여도가 낮아서 협동조합 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급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물 판매를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신용·지도 사업의 전문적 기능 활동이 저조한 형편이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신용사업의 전문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각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물론, 소비자 단체와의 협동을 통한 공동 이익 실현이 농수산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협동조합이 농어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제와 조직의 개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② 중앙회 중심의 조합 체제를 단위조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의 운영체제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④ 품목별 전문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2. 협동조합의 민주화

협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조합은 물론, 중앙회(또는 연합회)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과 중앙회장(또는 연합회장)의 피선거권도 조합원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장과 중앙회장(또는 연합회장)의 임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영농인과 수산인 및 여성 농어민의 협동조합 참여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가구 1인 이상의 복수 조합원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일정수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한편, 사실상 비농어민인 부실 조합원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

3.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화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함께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영 기능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기능과 관리기능은 주인인 조합원이 행사하는 기능의 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회의 경우 회장이 경영기능은 물론,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기능과 관리기능을 갖고 있고, 단위조합의 경우 역시 조합장이 세가지 기능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동조합도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경영의 전문화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것은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의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조합장의 대표권은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전무이사 임명권,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내에서의 조직 통할권으로 한정하고, 경영 책임은 전문 경영인인 전무이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 전무이사가 조합 경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무가 상임이사가 되어야 하며, 전무이사의 임명은 조합장이 이사회와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야 한다.

중앙회(또는 연합회)도 대표권과 경영권 분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회장(또는 연합회장)은 대표기능과 연구·조사·교육, 지도·감독, 정책활동 및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갖고, 사업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 전문 경영인은 이사 자격을 주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책임 부서의 관리권과 경영권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 경영인에 대한 임명은 중앙회장(또는 연합회장)이 이사회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도록 한다.

현재의 읍·면 단위조합으로서는 신용사업의 경쟁력 측면은 물론, 가공·유통 관련사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조합 경영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으로 단위조합들 간의 자율적 합병을 유도함으로써 신용·경제 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면, 농·수·축협중앙회도 정부 투자기관인 국영기업체와 같이 국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투자기관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어민이 출자한 민간 사업단체이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중앙회가

국정감사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으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중앙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농·수·축협을 통하여 정책 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나,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 연맹(ICA)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 협동조합법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품목별 전문조합의 육성

UR 협상 타결 이후 조합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요구와 기대보다 더 높아 질 것이므로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활성화는 더욱 시급하다. 경제사업의 핵심은 생산자 주도의 유통·가공체제 확립을 통한 소득 향상에 있다. 생산자 주도의 유통·가공업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시장 교섭력이 증대되어야 하며, 시장 교섭력 증대는 동일한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농어인들이 광역 조직화되어 농어민 스스로가 협동조합의 계통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농수산물 수급조절 능력과 유통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향후, 전문조합과 기존의 단위조합은 각각 업종별 전문조합과 지역조합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게 각각 도별, 권역별 연합회 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조합과 조합간, 조합과 중앙회간의 협동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확립되면 기존의 협동조합 시·도지회나 군지부는 당연히 도별, 권역별 연합회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5. 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신용사업 분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신·경분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 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는 별도의 농수산 금고와 같은 행태로 독립시킨다. 통합될 농수산 금고는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농림수산부를 주감독기관으로 하여 이 은행이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신용사업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농수산 금고와 같은 특수은행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X. 맺 음 말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는 이의 이행과 감시기능을 담당할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는 모든 국내산업 분야에 피할 수 없는 경제 질서가 되고 말았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점에서 포스트 UR(Post UR) 시대에 대비하여 앞으로 국가가 취해 나갈 장기적인 어촌 및 수산정책의 기본 방향을 체계화한 것이 이상의 「UR대비 수산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다.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 서술적이고 내용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음미하면 거기에는 우리 나라 수산업과 어촌, 어민에 대한 현장 진단과 아울러 연안어업에서부터 원양어업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검사 업무에서부터 가공, 수산 기술 개발 활동까지, 그리고 어민과 어촌의 교육 문제에 이르는 수산업과 어촌에 관련된 중요 과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과 수협 개혁에 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적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산물 유통제도과 수협 계통조직 및 경영체제 개편 있어서도 기본적인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30명의 위원 가운데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은 수협중앙회 이방호 회장과 필자 두 사람 밖에 없었다. 그 아래 2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었으나 수산에 관한 전문 식견을 가진 위원은 단 1명도 배치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농수산업 경쟁력분과, 농어촌 산업진흥분과, 농어민 복지분과의 3분과와 전체회의로 나누어 매주, 매월 관련회의가 빠짐 없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참석한다 해도 때로는 회의에 부득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혹시 회의 불참시 중요한 수산분야의 입안 과제가 소홀히 취급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많았다. 여기에서 솔직히 수산청이나 수협중앙회 등 중요한 수산중앙부처로부터 상세한 시책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적었으므로 수산분야의 현안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UR과 농민, 농업문제와의 관계를 연계시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적으로 호소해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당시 수산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불법어업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전례 없는 행정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으므로 마스크에 비친 어민과 어촌은 마치 바다의 무법자나 범법자 집단 비슷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민과 어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당시 농어촌 발전위원회로부터 농민과 같은 차원에서 얻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언론은 물론, 농발위원회조차도 어촌 및 수산업의 현실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어민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우리 나라 수산업의 UR에 의한 피해 상황과 그 영향을 어촌 실정과 연계하여 이해시키고, 수산정책의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역할과 활동의 성과는 만족스러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동 위원회를 통하여 특히 역점을 둔 수산분야의 정책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산정책 체계에 변화를 주어 수산 경제구조와 어촌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대응한 새로운

수산행정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로서 연안역 개발 사업과 권역별 또는 만별 어촌 종합 개발 시책과 같은 것을 새로이 수산시책화 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수산부문 예산으로서는 지금까지 성과가 아주 미약하였거나 지속적인 시책화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자원 육성과 그의 개발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전 연안에 대하여 자원 방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인위적,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 사실과 사례를 들어 지적하였다. 그 한 예로서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식목 사업을 국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자원 방류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수산자원 육성 사업이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지난 7월 부산 근교 어촌에서 자원 방류 사업과 바다 정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부분적인 실행이 입증된 셈이다.

셋째, 수산업 구조 조정 정책의 강력한 집행과 지원제도를 강조하였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감척·감통 정책의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의 제시, 어업 허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조정·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1척 1건주의 허가원칙에서 복수어업 허가주의의 채택, 공동어업과 양식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양식면허는 종래의 지정 품목 제도에서 품목 선택형 면허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넷째, 연안의 간척, 매립 사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75~76페이지에 「농지조성 및 확대를 위한 대규모 매립 간척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입해공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도 수산보전 지정 해제 등 어업 여건이 우수한 산란·서식 해역은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까지 명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금반 농발위 활동에 의한 수산부문의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수산청으로 하여금 어촌 및 어민 육성정책을 실질적인 시책 사업으로 관장하게 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종래의 정책체계에 없었던 어촌개발 사업을 수산청의 새 정책으로 부과한 셈이다. 어업생산 활동을 하나의 직업과 산업으로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장 개발이나 어로 수단에 관한 연구 못지 않게 생산 주체와 그 육성 체계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체계적으로 행해져야만 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수산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산분야의 사회과학 부재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분야를 지금까지 수산정책에서 소홀히 다루고 또한 제외시켜 왔다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수산시책 수립과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도별 수산연구소, 종묘배양센터 설치를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수산정책 체계는 생산, 기술 및 생산 기반 조성의 순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 체계는 자원 조성, 기술 개발, 생산과 경영, 유통 및 어촌개발의 순으로 체계화되고 이에 기초한 시책의 추진 실적 분석과 평가가 따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산청과 그 산하 기관의 기구 및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 지원 담당기구와 조직은 상대적으로 축소 개편되는 대신, 어촌 개발 관련 기구의 등장과 유통·무역·국제 관련 기구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고,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은 중앙 조직의 위상 강화와 함께 지방 및 해역별 수산 연구 기관의 역할 증대가 요청될 것이다. 그 밖에 수산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 기관에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수협의 계통 조직에 있어서도 경영체제와 사업체제에 상당한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며,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아진다(부록 1~5 참조).

참고자료

1.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7.
2.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시행령, 1994. 3. 24-7. 1
3. 농특세 배정기준, 경제기획원, 1994.
4. 농특세 15조원 투자계획, _____, 1994.
5. 농특세 수산부문 투자계획(안), _____, 1994.
6. 농특세 수산청 소관 투자계획(안), _____, 1994.
7. 2천년대의 농어촌 미래상, _____, 1994.

<부록 1> 농특세 15조원 투자계획(1994년~2004년)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94 주 경	소 관 부 처
I. 농어업 경쟁력강화 부문	87,735	1,670	
① 농업 기술개발	4,500	150	· 농림수산부등
② 불류센터건설 등 유통개선	14,550	700	· 농림수산부
③ 재정지정리	43,000	320	· 농림수산부
④ 어항건설	7,300	300	· 수산청
⑤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5,735		· "
⑥ 농수산 기술전문대학 및 자영농수산고교 지원	2,500		· 농진청등
⑦ 임도건설	3,150		· 산림청
⑧ 농수산신용보증기금 출연	7,000	200	· 재무부
II.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부문	44,080	1,450	
① 농어촌 도로확충	12,000	650	· 내무부
② 농어촌 주택개량	8,000	400	· 건설부
③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2,000	400	· 환경처
④ 농어촌 하수도정비	8,000		· 내무부
⑤ 농어촌 쓰레기처리장	4,080		· 환경처
III. 농어민 복지증진 부문	18,185	360	
① 농어민 연금제 실시	8,000	10	· 보사부
②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4,785	200	· "
③ 대학생 학자금융자	2,100	100	· 교육부
④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360		· 문화체육부
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940		· 문화체육부
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800	50	· 교통부 항만청
⑦ 농어민 직업훈련	1,200		· 노동부
합 계	150,000 (20개사업)	3,480 (12개사업)	

UR 대비 수산정책의 과제와 방향

<부록 2> 농특세 수산부문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사업명	소유액	사업내용
합계	17,572	
I. 수산청 소관	13,535	
① 어항건설 · 1,3종 어항건설 · 2종	7,800 (3,300) (4,500)	· 24개항('92 이전 착공) · 200개항(국고50, 지방비50%)
② 어촌 종합개발	5,035	· 150개 권역(전국)
③ 양식어장 개발	700	· 1,000ha(패류, 어류양식장)
I. 관계부처에 반영 추진 중	4,037	
④ 수산기술 개발 · 첨단 양식기술 개발 · 수산대학 장비 지원 · 현장 애로 기술 개발	880 (600) (80) (200)	· 연안목장화 시스템 개발외 · 수산대 4개교, 전문대 2개교
⑤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	257	
⑥ 수산물 유통 개선 · 직판장 · 물류센터 건설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2,900 (1,000) (1,000) (900)	· 103개소 · 5개소 · 180개소

<부록 3> 농특세 수산청소관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사업명	계	5개년 계획					'99~2004		
		소계	'94	'95	'96	'97		'98	
합계	13,800	8,380	300	2,019	2,019	2,021	2,021	5,420	
재원	국고	8,550	5,840	150	1,422	1,421	1,424	1,421	2,710
	국고용자	350	140	-	35	35	35	35	210
	지방비	4,635	2,295	150	536	536	536	536	2,340
	자담	265	105	-	26	27	26	27	160
○ 어촌종합개발	5,300	2,100	-	525	525	525	525	3,200	
(국고)	2,650	1,050	-	263	262	262	263	1,600	
(지방비)	2,385	945	-	236	236	237	236	1,440	
(자담)	265	105	-	26	27	27	26	160	
○ 어항건설확충	7,800	6,000	300	1,424	1,424	1,426	1,426	1,800	
(국고)	5,550	4,650	150	1,424	1,424	1,426	1,426	900	
(지방비)	2,250	1,350	150	300	300	300	300	900	
- 1, 3종 어항	3,300	3,300	-	824	824	826	826	-	
(국고)	3,300	3,300	-	824	824	826	826	-	
- 2종 어항	4,500	2,700	300	600	600	600	600	1,800	
(국고)	2,250	1,350	150	300	300	300	300	900	
(지방비)	2,250	1,350	150	300	300	300	300	900	
○ 양식어장개발	700	280	-	70	70	70	70	420	
(국고)	350	140	-	35	35	35	35	210	
(국고용자)	350	140	-	35	35	35	35	210	

주) 1. 국고, 국고용자, 지방비 재원은 농특세임.

2. 2종 어항 중 1995년 예산(안) 확보액은 375억원(국고 187.5, 지방비 187.5).

3. 앞의 <부록 2>의 수산청 소관 합계액 13,535억원과의 차이는 어촌 자담액 265억원이 별도로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부록 4> 2천년대의 농어촌의 미래상

	1993	2004	1994~2004(사업량)
○ 농림수산업 비중(%)	7.1	3.6	
○ 농가인구(만명) (총 인구대비 : %)	541 (12.3)	312 (6.5)	
○ 농가호수(만호)	159	105	
○ 경지정리(천ha) (재경지정리, 천ha)	643 (-)	733 (200)	92 (200)
○ 도매시장, 물류센터(개소)	10	50	40
○ 농어민 신용보증 규모(억원) (신용보증기금 조성규모 : 억원)	25,000 (1,726)	144,000 (9,638)	119,000 (7,912)
○ 어항건설(개소) (국가관리어항) (지방어항)	169 (48) (121)	407 (83) (324)	238 (35) (203)
○ 어촌종합개발(권역)	-	160	1,600개 어촌계
○ 임도건설(천km) (임도밀도, km/ha)	5,400 (0.9)	12,400 (1.9)	7,000km
○ 농어촌 도로포장률(%)	25	85	27,000km
○ 농어촌 주택개량(천호)	125	715	500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1	85	
○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개소)	-	136	136개소
○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개소)	-	9	
○ 농어촌 공공도서관(개소)	142	242	읍지역 60개 면지역 40개
○ 농어민 직업훈련(천명)	52	236	184

<부록 5> 농특세 배정기준 (1994년~2004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94추경	사 업 내 용
I. 농어업 경쟁력강화	90,775	1,670	
① 농어업 기술개발	5,040	150	○ 첨단기술개발(3,000억), 농과대학시설장비(390억), 현장애로기술개발(1,650억)
② 농수산 기술전문대학 및 자연농수산고교 지원	2,500	-	○ 기술전문대(2개교), 임업기능인훈련원, 자연농수산고교(농고 10, 수고 3개교)
③ 재경지정리	43,000	320	○ '76이전 경지정리지역중 대구획화 가능농지 200천ha
④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2,000	-	○ 유기 자연농업단지조성(1,000개소) 및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⑤ 물류센터건설 등 유통개선	14,550	700	○ 대도시물류센터(16개소), 종합포장센터(160개소), 간이집하장(4,000개소)
⑥ 농수산신용보증기금 출연	7,000	200	○ 신용보증기금 조성규모 1조원(2004)으로 확대
⑦ 어항건설	7,800	300	○ 국가어항(24개항) 및 지방어항(200개항) 조기완공
⑧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5,735	-	○ 양식어장(700억원), 어촌종합개발(5,035억원)
⑨ 임도건설	3,150	-	○ 7,000km(임도밀도 : 0.9m/ha → 1.9m/ha)
I.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41,040	1,450	
① 농어촌 도로확충	12,000	650	○ 도로포장율 : ('93년)25%→(2004년)85%
② 농어촌 주택개량	8,000	400	○ 불량 노후주택 25만호 개량

UR 대비 수산정책의 과제와 방향

사 업 명	총 소 요	'94추경	사 업 내 용
③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2,000	400	○ 50호이상 자연수 의존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④ 농어촌하수도 및 오염소하천정비	7,000	-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5,000억원), 오염소하천 정비(2,000억원)
⑤ 농어촌 폐기물처리 지원	2,040	-	○ 군당 1개소(총 136개소)
Ⅲ. 농어민 복지증진	18,185	360	
① 농어민 연금제 실시	8,000	10	○ 연금자출료의 1/3(월 2,200원) 및 관리운영비 지원
②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4,785	200	○ 군단위보건의료원 신설(25개소)및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장비보강,민간병원시설장비용 용자지원
③ 대학생 학자금용자	2,100	100	○ 매년 1만명, 1인당 200만원 용자
④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360	-	○ 도별 1개소씩 총9개소 건립
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940	-	○ 읍 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100개소) 및 자료구입 지원
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800	50	○ 벽지 적자버스노선지역 마을버스 구입지원 및 낙도보조항로 노후여객선 배체
⑦ 농어민 직업훈련	1,200	-	○ 매년 18천명 직업훈련 지원
합계(21개사업)	150,000	3,480	

Fisheries Policy in Korea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 Its Problem and Direction

Jung – Yoon CHOE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direction of a long – rang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in Korea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hen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ere concluded last year, the government soon set up the Committe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nd launched o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olicy to provide for the post-Uruguay Round. The Committee drew up an all-round policy report, “The Problem and Direction of Agriculture Policy Reform” as a result of the six-month activity of this committee from February through July, 1994 in which the author participated, and presented it to the President.

The author rearranged the problems of a long-range policy related to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apart from this report, and drew up another report under the title, “Fisheries Policy in Korea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 Its Problem and Direction,” which was reported at the year 1994 autumn symposium of the Korean Pedagogic Society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